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 제공·임대에 대한 알선금지〉

■ 이연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239호)

2026. 9.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이연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239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2
1.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 제공·임대에 대한 알선금지(안 제56조 등)	2

□ 이연회의원 대표발의(221546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연회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6. 6. 15.
3. 회 부 일 : 2026. 7.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는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송 현장에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 운송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제3자가 이를 알선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불법 운송의 알선 행위도 처벌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 운송을 알선하는 행위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불법 유상 운송을 방지하고 화물운송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6조 및 제67조제7호).

Ⅲ. 검토의견

1.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 제공·임대에 대한 알선금지(안 제56조 등)

개정안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 제공·임대에 대한 알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u>제공하거나 임대</u> 할 수 있다.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 ----- ----- ----- ----- ----- <u>되며, 누구든지 이를</u> <u>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u> ----- ----- ----- <u>제공 또는 임</u> <u>대하거나 이를 알선할</u> -----.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의3. (생략) 7. 제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u>제공하거나 임대</u> 한 자	제67조(벌칙) ----- ----- -----. 1. ~ 6의3. (현행과 같음) 7. ----- ----- <u>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u> <u>한</u> ---

현행	개정안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검토의견

현행법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로 하여금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도 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 운송 행위에 더하여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음.¹⁾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무허가 운송주선사업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²⁾ 무허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³⁾

1) 숙지지않는 자가용화물자동차 불법 유상 운송...사실상 '양심'에 맡기는 구조, 2022. 7. 8., 영남일보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20705010000551>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서울지방법원은 현행법 제24조와 제67조에 근거하여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 알선을 지속적으로 반복한 자에 대해서는 무허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한 자라고 판시한 바 있으나,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 제공·임대에 대한 단발적 알선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상 명시적 벌칙 조항이 없음.⁵⁾

이에 개정안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 제공·임대에 대한 알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행법에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불법 알선을 보다 명확히 금지하도록 하고 단발적인 알선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임.

참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①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한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② 사업용자동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한 자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9고정559 판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5)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형법」에 따른 교사범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형법」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③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④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나. 관계기관 및 단체 의견

1) 국토교통부

화물운송시장 질서확립을 위해 자가용 화물자동차 불법 유상운송 알선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2)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 운송 알선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여 화물운송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중개·연결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알선행위의 방식 및 사업자의 관여 형태 또한 다양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그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를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체적인 거래 품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거래 당사자 간 정보 제공 및 연결 기능을 제공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아, 개별 이용자가 운송 수단을 제공하는 용역을 거래하는지 여부 자체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통제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580